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3.(목)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 9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7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21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2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 집행상의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라는 규정을 “각 위원회”로 개정·포괄하는 사항이며, 이는 위원회 체계 정비에 맞춰 공인(직인)의 비치 및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조문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3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항)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 불필요하거나 불일치하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 하고자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4조 중 의장은「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이는 관련 자치법규(위원회 조례 및 회의 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관련 절차 및 운영 규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협의 절차 조항을 정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법규의 개정 사항을 연계 반영하여 조문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이나 타 관련 볍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4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7조제2항)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비·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3조제3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청문 등을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제3항 인사청문회 미완료로 인한 경과보고서 미송부 시, 군수의 재요청 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로 정비함으로써 지정기간의 산정 시점을 구체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였음.

○ 안 제17조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용어를 정비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를 통한 인사청문 의결 방식을 도입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과보고서 재요청 기한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령 및 타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5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관련 상임위원회 절차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감사 또는 조사 관련 위원 사항 정비(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주체를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별”에서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려는 것으로 정비함.

○ 안 제2조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경우,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완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3조 “바로”를 “지체 없이”로 정비하고,
행정사무조사 주체 중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문구 삭제 및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본회의 직접 의결·수행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6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칙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원의 본회의 회부 및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제1항)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심사 절차 관련 조문 정비
(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비됨에 따라, 하위 규칙 내 상임위원회 관련 문언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규칙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5조제2항 후단 상임위원회 조항 삭제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개정하여 안건 심의·의결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6조의 “의원”을 “의원 및 위원”으로 정비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자치법규인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체계 정비 조치로서, 관련 조항의 용어와 규정을 일치시켜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체계상 법적 흠결이나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7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심사, 겸직신고 및 징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 관련 사항 정비(안 제6조, 제10조)

○ 겸직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

○ 징계 기준 및 금품등 수수 가액 범위 정비(별표 3, 별표 4)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심사, 겸직신고 및 징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6조 의원 윤리심사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별표3에서 징계 유형 기준을 구체화 및 세부화하여 징계 처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였음.

○ 안 제7조에서 겸직신고 내역의 공개 여부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겸직 의원의 명단, 겸직 기관명, 직위 및 보수 수령 여부 등의 공개 범위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 하였음.

○ 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에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간 정합성을 높혔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1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28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징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5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여비의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처분 또는 구속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5조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원금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안 제6조 의원이 징계처분(출석정지 등)을 받거나 구속되는 등 실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방지 및 비위행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9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관련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4. 관계법령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개인정보보호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불출석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진행 시, 관련 별지 서식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징수 관련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란 중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양식을 정비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식 내 과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는 정당한 조치이며 상위 법령 등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조치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50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순애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사항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신청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적사항 기재란 중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당 지급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관련 양식을 정비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식 내 관행적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개선하는 정당한 조치이며 상위 법령 등 위배됨이 없으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51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치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순찰차 미주차 시간대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약칭 및 자구 정비(안 제1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1조의2)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치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11조의2를 신설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와 순찰차의 정의,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표지 설치, 운영 및 지정 해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용주차구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여 한정된 노상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그 외 안 제1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8조는 법령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1조의2제2항의 일반차량 주차허용에 대하여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로 규정한 것은 허용시간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전용주차구획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허용시간 또는 허용조건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52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 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규정(안 제3조~제4조)

○ 지원 제외대상 규정(안 제5조)

○ 신청절차 및 중복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주거기본법」,「주택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면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2조제2호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을 7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정부 정책의 주거 지원 및 주택청약 등에서 통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를 설정하기에 이에 맞추어 명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달성군 청년인구수 통계(2021~2025년)** (단위: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청년 (19~39세)	71,008	68,057	64,773	60,800	57,544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통계)

● **달성군 혼인통계(2021~2025년)** (단위: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혼인건수	1,003	1,087	984	1,872	1,774

* 출처 :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통계자료

○ 안 제4조에서 지원근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등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4조에서 대출이자 지원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대상과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매년 군수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오산시, 서울 강남구 등에서는 소득기준, 주택 및 임차보증금 기준, 대출금액,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지자체별 신혼부부(청년) 대출 이자 지원 현황(2026.8월 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지 원 내 용	예산액 (2026년 본예산)	비 고
1	오산시	-신혼부부: 연1회, 100만원 이내, 1년간 -청년: 연1회, 100만원 이내, 1년간	1억원	
2	강남구	-신혼부부: 연1회, 300만원 이내, 3년간 -청년: 연1회, 200만원 이내, 3년간	2.7억원 1.8억원	
3	서산시	-신혼부부: 연1회, 100만원 이내, 5년간	1.5억원	
4	양평군	-신혼부부: 연1회, 200만원 이내, 2년간	1억원	
5	여주시	-신혼부부: 연1회. 200만원 이내, 5년간	2억원	
6	충주시	-신혼부부: 연1회, 100만원 이내, 3년간	2억원	
7	이천시	-신혼부부: 연1회, 200만원 이내, 1년간	2억원	
8	고창군	-신혼부부: 연1회, 200만원 이내, 3년간 -청년: 연1회 200만원 이내, 3년간	1.5억원	
9	대구 남구	-신혼부부 · 주택구입: 연1회, 300만원 이내, 3년간 · 주택전세: 연1회, 300만원 이내, 3년간 ※ 집행부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조례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45억원 (30억원 이월)	'25년 예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및 지자체 홈페이지 예산서 공시 검색 결과

○ 지원기준은 사업 시행 당시의 금리나 재정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지원계획에 위임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에게 직접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수혜자의 범위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까지 모두 행정계획에 맡길 경우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수혜자 간 형평성, 의회의 재정통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지원한도·지원기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대구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조례 제정(2025.5.7.)

○ 2025년도 45억원 예산편성(30억원 이월)/1,500세대(구입 1,000세대/전세 500세대)

□ 대상자 기준

구 분	세 부 조 건	
	구 입	전 세
신혼부부	혼인신고 10년 이내 (2016. 1. 1. 혼인신고자부터) ※ 나이제한 없음	
부부합산 연 소 득	1.3억원 이하(세전)	7,500만원 이하(세전)
	※ 2024년 소득 기준(7월부터는 2025년 소득 기준)	
주 택	구입가 6.5억원 이하 (계약서 기준)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및 전용면적 85㎡이하
	※ 단, 가족간 계약(매매, 임차, 증여 등)이 아닐 것	
대 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용도의 대출	
거 주	구입 또는 전세거주 주택에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택	1가구 1주택 (소유/담보/거주 동일)	1가구 무주택 (임차/거주 동일)

□ 지원금액 및 기준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연소득 및 대출금리에 따라 세대별 지원한도 적용

○ 지원금리

▸구입 지원 대상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부부합산연소득(세전)	지원금리	지원 한도액	
구입 지원 대상자	8천만원 이하	3.0%	월 25만원	연 300만원
	8천만원 초과 ~ 1.3억원 이하	2.7%	월 22.5만원	연 270만원

▸전세 지원 대상자: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자녀 수	지원금리	지원 한도액	
전세 지원 대상자	무자녀	1%	월 83,340원	연 100만원
	1자녀	2%	월 166,670원	연 200만원
	2자녀 이상	3%	월 25만원	연 3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53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수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민의 생활공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한 반복 문구 정비 (안 제4조)

○ 지원 대상지를 정비하여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지에 포함 (안 제5조)

○ 위험수목 처리 선정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0조)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주택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에 단독주택을 추가하고, 지원 제외대상 및 지원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조례는 주민 생활공간 주변의 수목 중 낙뢰·바람·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지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수목의 전도나 가지 낙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주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주체나 관리조직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형 위험수목 처리에는 전문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위험수목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위험수목 지원 관련 입법례에서도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례적인 지원방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위험수목이 개인 소유의 대지나 주택에 있는 경우 공공재원이 사유재산 관리에 사용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은 단순한 수목관리나 개인 편익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안 제5조제2항에 유실수·조경수·정원수·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재산관리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 관리까지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지원범위를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유사하게 수성구 등에서도 이와 같은 수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54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19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2. 제안사유

○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 및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가입신청자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달성군 관내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정보 제공 및 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주택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운영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25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전국 252개 지역주택조합에서 6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정보 제공,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인 가입 시점에서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1]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치입법으로서 주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지역주택조합 등”, 조례 용어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률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지역주택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안 제4조에서는 가입신청자가 조합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5조는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에게 법률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 감독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자치입법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적절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시 실태조사 절차의 명확화, 안내서의 대(對)군민 홍보채널의 다양화 등 구체적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언론 보도

“지역주택조합 252곳서 위법 64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96개를 실태 점검해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합원이 돼 주택·아파트 건설 등에 참여하는 조합이다. 하지만 분담금 문제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태 조사 결과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하는 경우(197건·30.7%)**가 가장 많았다. 조합 임원이 분기마다 작성해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23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33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분쟁이 심각한 8개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조합에서 **증액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의 증액 요구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운 사례**가 확인됐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추진과 함께 시정명령(28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출처] - 국민일보(김윤 기자) / 2025. 9. 11.